

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단체명	사업자등록번호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사무소 소재지				

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13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교육 인력·시설·설비의 확보 현황 1부 2.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각 1부 3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각 1부 4. 교육규정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 증명서	

처리절차

